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통행량 분산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통행료 감면 등>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15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관 현 준

## 목 차

|                                                |    |
|------------------------------------------------|----|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204415) .....                    | 1  |
| Ⅰ. 제안경위 .....                                  | 1  |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Ⅲ. 검토의견 .....                                  | 2  |
| 1. 통행량 분산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통행료 감면(안 제15조제4항) ..... | 2  |
| 2. 통행료 감면비용 지원 주체로 지자체 추가 (안 제15조제5항) .....    | 13 |

##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2204415)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7.
3. 회 부 일 : 2024. 9. 3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활동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물류활동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는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도시 내 도로의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교통수요를 고속국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 Ⅲ. 검토의견

#### 1. 통행량 분산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한 통행료 감면(안 제15조제4항)

#####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국도 중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물류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국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 현행                                                 | 개정안                                                                                                                                                                                                                                                            |
|----------------------------------------------------|----------------------------------------------------------------------------------------------------------------------------------------------------------------------------------------------------------------------------------------------------------------|
|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③ (생략)<br><u>&lt;신설&gt;</u> |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u>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 중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u><br>1. <u>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u><br>2. <u>물류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u> |

| 현행                                                                                    | 개정안                                                                                                                                                                                                               |
|---------------------------------------------------------------------------------------|-------------------------------------------------------------------------------------------------------------------------------------------------------------------------------------------------------------------|
| <p>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 <p><u>높이기 위하여 고속국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u></p>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p> <p>-----</p> <p>-----.</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나. 검토의견

유료도로는 크게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유료도로로 구분됨. 개정안에서는 통행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도로를 “고속국도”로 규정하는바, 「도로법」의 분류상 고속국도에 해당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만 개정 대상에 포함되며 지자체 유료도로는 제외됨.

### 【전국 유료도로 현황】

| 구분       | 재정고속도로<br>(한국도로공사) | 민자고속도로<br>(건설재원별) | 지자체 유료도로 |
|----------|--------------------|-------------------|----------|
| 2024년 기준 | 36개 노선             | 22개 노선            | 34개 구간   |
|          | 4,276km            | 883.0km           | 223.7km  |

※ 자료: 국토교통부

현행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3항은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참고자료1 참조)에서는 통행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차량의 종류 및 그 감면율이 규정되어 있음.

#### 【통행료 감면대상별 감면율】

| 항 목 |                                                                                  |        | 감면율      | 목 적    |
|-----|----------------------------------------------------------------------------------|--------|----------|--------|
| 면제  | 군작전용차량, 경찰작전용차량,<br>구급·구호·소방차량, 교통단속용차량,<br>유료도로건설·유지관리차량, 긴급물류수송차량,<br>긴급통행제한차량 |        | 100%     | 긴급차량지원 |
|     | 독립유공자                                                                            |        |          | 교통약자배려 |
|     | 국가유공자                                                                            | 1~5급   |          |        |
|     | 5·18 부상자                                                                         | 1~5급   |          |        |
| 감면  | 국가유공자                                                                            | 6~7급   | 50%      | 교통약자배려 |
|     | 5·18 부상자                                                                         | 6~14급  | 50%      |        |
|     | 장애인                                                                              |        | 50%      |        |
|     | 고엽제<br>환자                                                                        | 후유증환자  | 50%      |        |
|     |                                                                                  | 후유의증환자 | 50%      |        |
|     | 경차(1,000cc미만), 친환경차                                                              |        | 50%      | 국가정책지원 |
|     | 출퇴근(1-3종)                                                                        |        | 20%, 50% |        |
|     | 화물차 심야할인(영업용)                                                                    |        | 30%, 50% |        |
|     | 비상자동제동장치                                                                         |        | 30%      |        |

※ 근거: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

긴급사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100% 면제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5·18부상자의 경우 상이 등급에 따라 면제 또는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차·출퇴근 차량·화물차·비상자동제동장치를 도입한 차량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통행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2023년의 경우 6,264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이 이루어진 바가 있음.

### 【연도별 통행료 감면금액(2019~2023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통행료 총수입 |              | 5,644,489 | 5,325,720 | 5,722,941 | 5,855,953 | 6,096,378 |
| 감면금액 합계 |              | 503,082   | 465,946   | 427,498   | 536,388   | 626,405   |
| 면제      | 소계           | 149,149   | 122,784   | 69,017    | 157,645   | 222,708   |
|         | 군·경 작전차량     | 6,155     | 4,193     | 3,825     | 6,329     | 8,435     |
|         | 국가유공자 등      | 2,254     | 1,886     | 1,753     | 1,661     | 1,617     |
|         | 유지보수차량       | 10,949    | 11,430    | 8,967     | 7,849     | 7,907     |
|         | 교통단속차량       | 2,235     | 1,991     | 2,066     | 2,125     | 3,344     |
|         | 구호·구급·소방     | 2,208     | 2,118     | 2,740     | 2,660     | 2,575     |
|         | 긴급 통행제한·물류수송 | 22        | 90        | 34        | 1,448     | 750       |
|         | 명절(설·추석)     | 125,326   | 61,695    | 0         | 83,215    | 169,017   |
|         | 특별(평창)       | 0         | 0         | 0         | 0         | 0         |
|         | 노선버스(코로나)    | 0         | 39,381    | 49,632    | 52,358    | 29,063    |
| 할인      | 소계           | 353,933   | 343,162   | 358,481   | 378,743   | 403,698   |
|         | 경 차          | 119,551   | 110,826   | 111,131   | 111,839   | 114,734   |
|         | 국가유공자 등      | 6,243     | 5,398     | 4,109     | 4,048     | 3,880     |
|         | 장애인          | 43,444    | 37,994    | 38,723    | 39,456    | 38,799    |
|         | 출퇴근          | 66,139    | 67,334    | 69,657    | 70,220    | 73,779    |
|         | 화물차 심야할인     | 106,031   | 107,438   | 112,524   | 110,008   | 108,419   |
|         | 전기차·수소차      | 7,978     | 12,944    | 21,865    | 42,634    | 62,552    |
|         | 비상자동제동장치     | 4,547     | 1,228     | 472       | 538       | 1,535     |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국도 중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② 물류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국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제2호),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고속국도 중 일부 구간이 특정 지방자치단체 권역에 포함되고 통행량이 많아 사실상 도시고속도로<sup>1)</sup>의 기능이 대부분인 고속국도의 경우 통행료가 해당 지역의 주민을 비롯하여 물류업체, 해당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남해고속도로 서부산나들목-가락요금소 구간(5.1km)이 대표적인 사례임. 해당 구간은 부산 권역 내 도로이면서 부산항 신항과 녹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구간의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교통량 분산 효과를 높이며, 지역주민을 비롯한 해당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물류업체 및 관련 기업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참고로, 전국에서 무료로 운용되고 있는 고속국도는 14개 노선 23개 구간(148.8km)이며,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무료운용 사유는 주로 고속국도 부지가 협소하는 등 도로 구조상 요금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임.

---

1) 도시고속도로는 법적 정의가 있는 개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중 일부를 도시고속도로로 칭하고 있음. 건널목과 신호체계가 없으며, 최고속도가 통상 80~90km/h이며, 도시 지역의 간선도로 역할을 함.

【 고속도로 미수납구간 현황 】

| 지역              | 체계  | 노선명(총연장 km)          | 대상구간                                                            | 연 장(km)                                 |
|-----------------|-----|----------------------|-----------------------------------------------------------------|-----------------------------------------|
| 수도권<br>(114.21) | 개방식 | 수도권 제1순환선<br>(91.72) | 학의JCT~안현JCT<br>시흥IC~노오지JCT<br>김포IC~일산<br>퇴계원~남양주IC<br>강일IC~송파IC | 21.51<br>15.99<br>5.44<br>5.27<br>15.53 |
|                 |     |                      | 소 계                                                             | 63.74                                   |
|                 |     | 경인선<br>(13.44)       | 서인천~부평IC<br>서운JCT~신월IC                                          | 3.71<br>6.61                            |
|                 |     |                      | 소 계                                                             | 10.32                                   |
|                 |     | 제2경인선(26.68)         | 인천(시점)~서창JCT<br>신천IC~삼막(종점)                                     | 9.83<br>13.05                           |
|                 |     |                      | 소 계                                                             | 22.88                                   |
|                 | 폐쇄식 | 영 동 선(234.4)         | 서창(시점)~월곶JCT                                                    | 6.00                                    |
|                 |     | 서해안선(336.09)         | 조남JCT~금 천(종점)                                                   | 11.27                                   |
| 지방권<br>(34.59)  | 폐쇄식 | 경부선(415.34)          | 구서(시점)~구서IC                                                     | 0.60                                    |
|                 |     | 남해선(273.20)          | 학산(시점)~서영암IC<br>대저JCT~덕천(종점)<br>도룡IC~해룡(종점)                     | 0.38<br>2.91<br>1.90                    |
|                 |     |                      | 소 계                                                             | 5.19                                    |
|                 |     | 울산선(14.30)           | 장검IC~무거(종점)                                                     | 1.05                                    |
|                 |     | 새만금포항선(130.35)       | 학전IC~포항(종점)                                                     | 1.61                                    |
|                 |     | 호남선(194.22)          | 북광산IC~문흥IC                                                      | 14.10                                   |
|                 |     | 순천완주선(117.78)        | 해룡(시점)~동순천IC                                                    | 0.51                                    |
|                 |     | 중앙선(288.71)          | 삼락(시점)~초정IC<br>춘천IC~석사(종점)                                      | 4.50<br>1.09                            |
|                 |     |                      | 소 계                                                             | 5.59                                    |
|                 |     | 남해제1지선(17.88)        | 서마산IC~동마산IC                                                     | 3.72                                    |
|                 |     | 남해제2지선(20.25)        | 서부산IC~감전(종점)                                                    | 2.22                                    |
|                 |     | 총 14개 노선             | 23개 구간(148.8km)                                                 |                                         |

※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개정안에 따른 재원 소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고속국도 중 20km 미만 구간이면서 안 제15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파악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구간, 감면 대상 차량을 선별하는 기준을 알 수 없으므로 지원 규모 추산이 어렵다는 입장임.<sup>2)</sup>

다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인 재정고속도로는 1,543개인데, 20km 미만 전체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경우 2023년 결산 기준 재정고속도로에 한하여 8,400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이는 2023년 통행료 수입 4조 3,000억원의 19.6%에 해당하며, 통행료 감면 차량은 2023년 재정고속도로 이용차량 18.2억대 중 8.5억대(46.6%)임. 참고로, 20km 미만 구간 통행료 면제 시 시·도별 면제규모 및 비중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억원, %)

| 개정안에 따른 지역별 20km 미만 구간 통행료 면제 규모 |       |       |     |       |       |
|----------------------------------|-------|-------|-----|-------|-------|
| 구 분                              | 금 액   | 비 율   | 구 분 | 금 액   | 비 율   |
| 부산                               | 380   | 4.5%  | 강원  | 121   | 1.4%  |
| 대구                               | 481   | 5.7%  | 충북  | 84    | 1.0%  |
| 인천                               | 656   | 7.8%  | 충남  | 145   | 1.8%  |
| 광주                               | 92    | 1.1%  | 전북  | 45    | 0.5%  |
| 대전                               | 185   | 2.2%  | 전남  | 269   | 3.2%  |
| 울산                               | 38    | 0.5%  | 경북  | 294   | 3.5%  |
| 경기                               | 4,528 | 53.9% | 경남  | 1,086 | 12.9% |

※자료 : 한국도로공사

2) 국회예산정책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안번호 2204415), 2024.11.1.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감면액 및 그 감면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실시협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민자고속도로별 실시협약의 세부규정에 따른 비용 지원 규모를 개정안 심사 단계에서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가 민자고속도로를 고려하였을 때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현행 감면제도 내용의 검토

개정안 제1호의 통행량 분산의 목적과 관련,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6호3)에 따라 출퇴근 차량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대(05시~09시/18시~22시)에 한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20km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할인<sup>4)</sup>제도가 적용중임.

개정안 제2호의 물류활동 지원 목적과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는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8호5)에 따라 물류경쟁력 강화·물류기업의

---

###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8.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4) (감면율) 05시~07시 및 20시~22시 : 50%, 07시~09시 및 18시~20시 : 20%

### 5)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8.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교통비 부담 완화 및 교통분산을 위해 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심야(21시~06시) 할인<sup>6)</sup> 제도를 운영중임.

다만, 이는 일부 시간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개정안과 비교할 때 감면을 통한 효과는 제한적인 측면은 있음.

### 3) 개정안 각 호 적용 범위의 명확화

개정안은 제15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1호에서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호는 물류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속국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예컨대, 공항·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기반시설로 향하는 노선 중 도심지역의 다른 도로와 연계되어 통행량 분산 효과가 있는 고속국도는 제1호, 제2호에 모두 해당될 수 있음. 따라서 각 호의 적용대상이 구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임.

한편, 개정안은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고속국도 중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임범위의 구체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6) (감면율) 심야시간 이용비율 70% 이상인 경우 50% 감면, 이용비율 20~70%인 경우 30% 감면

#### 4) 제21대 회의 경과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3145호)이 2023. 12. 5.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심사되었는데,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재무적 부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동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임기만료폐기됨.

#### 다. 정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 1) 국토교통부

현재 출퇴근 및 화물차 할인 등 유사 감면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1,500여개에 달하는 20km 미만 전체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는 경우 과도한 손실이 우려됨. 통행료는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중이나 감면 규모는 지속 확대되어 연간 4,900억원(2019년 대비 23% 증가) 수준으로 추가 감면이 곤란함. 참고로 요금인상은 2004년 4.5%, 2006년 4.9%, 2011년 2.9%, 2015년 4.7% 이루어짐.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 유지관리·개량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감면 확대시 도로 유지관리 곤란 등으로 안전확보가 어려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확대하는 경우 국가 재정지원 등을 통한 손실 보전이 필요하여 재정당국 협조가 필요함.

## 2) 한국도로공사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우선,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구간 요금인하는 전국 이용자 고려 시 곤란하며, 타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점, 이용거리별·지역별 차별문제(도시주민 요금을 지방부 주민이 부담 등)가 발생하는 점이 있다고 제시함.

둘째로, 재무적 부담의 경우 20km 미만 면제 적용 시 8,400억원 추가 손실이 예상되며, 감면제도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지원이 없는 점, 안전투자비가 급증하는 점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도로공사 부채는 2023년 38.3조원, 2024년 41.5조원이며 2026년 47.4조원, 2028년 51조원이 예상된다고 설명함.

셋째로,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으로 연 1,6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임.

## 2. 통행료 감면비용 지원 주체로 지자체 추가 (안 제15조제5항)

###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 주체로 국가만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비용 지원 주체로 지자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통행료 감면 비용이 증가하는 점, 감면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비용지원의 주체로 지자체를 추가할 경우 통행료 감면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현재에도 지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통행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울주군의 사례가 대표적임. 울주군은 울주군민이 관내 고속도로를 출퇴근시간대에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이 대표적임.<sup>7)</sup>

다만,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사정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75 |

7) 지자체의 유료도로 통행료감면 정책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3 참조

## 참고 1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

###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1.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1의2.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 1의3.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을 한 경우 교통이 두절되어 장시간 고립되거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다른 도로로 우회시켜 유료도로의 계속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차량으로서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 1의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2의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5.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배기량이 1천cc 미만을 것
  - 나.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인 것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출·퇴근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고 진출입요금을 통과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제8호에 따라 할인받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7.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8.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9.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 9의2.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이 경우 감면기간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차량(같은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한 차량은 제외한다)일 것
  - 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였을 것
  - 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것
10. 삭제
- ② 법 제15조제3항에서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날
- ③ 제1항·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6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1. 통행료의 100분의 100
    - 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내지 제1호의4의 차량
    - 다.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 마. 제2항 각 호의 날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2. 통행료의 100분의 50
    - 가. 제1항제2호의 차량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 다.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
    - 라. 제1항제6호의 차량 중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또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 마.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1) 고속국도 운행시간(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 통과 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차량
      - 2)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개방식 요금소(진출입 요금소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요금소로 통과할 때 일정 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소를 말한다)를 통과하는 차량
    - 바. 제1항제9호의 차량
  3. 통행료의 100분의 30
    - 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인 차량

나. 제1항제9호의2의 차량

4. 통행료의 100분의 20: 제1항제6호의 차량(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⑤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 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 수납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전자적인 지급수단을 도입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 국가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 참고 2

## 20km미만 주요구간 현황

### □ 폐 쇄 식 (1,524개)

(단위 : 대, km, 원)

| 영업소      | 교통량<br>(일) | 요금<br>부과거리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 서울-수원신갈  | 33,703     | 17.24      | 1,800 | 1,800 | 1,900 | 2,200 | 2,400 |
| 서서울-서안산  | 29,173     | 8.3        | 1,300 | 1,400 | 1,400 | 1,500 | 1,600 |
| 서부산-장유   | 28,585     | 14.73      | 1,700 | 1,700 | 1,700 | 2,000 | 2,200 |
| 동서울-경기광주 | 23,504     | 11.34      | 1,500 | 1,500 | 1,500 | 1,700 | 1,800 |
| 동김해-북부산  | 20,569     | 7.42       | 1,300 | 1,300 | 1,300 | 1,500 | 1,600 |
| 서안산-군자   | 20,078     | 6.54       | 1,200 | 1,300 | 1,300 | 1,400 | 1,500 |
| 부산-남양산   | 16,678     | 14.01      | 1,600 | 1,600 | 1,700 | 1,900 | 2,100 |
| 서서울-안산   | 14,990     | 4.97       | 1,200 | 1,200 | 1,200 | 1,300 | 1,300 |
| 서김해-북부산  | 13,589     | 11.97      | 1,500 | 1,500 | 1,600 | 1,800 | 2,000 |
| 화원옥포-남대구 | 13,035     | 6.09       | 1,200 | 1,200 | 1,200 | 1,400 | 1,400 |
| 비봉-서서울   | 12,331     | 15.83      | 1,700 | 1,800 | 1,800 | 2,100 | 2,300 |
| 부산-양산    | 10,950     | 17.34      | 1,800 | 1,800 | 1,900 | 2,200 | 2,400 |
| 동광산-서광산  | 10,718     | 6.57       | 1,200 | 1,200 | 1,200 | 1,300 | 1,400 |
| 안산-군자    | 10,329     | 9.87       | 1,400 | 1,400 | 1,500 | 1,600 | 1,800 |
| 동수원-서울   | 9,588      | 19.46      | 1,900 | 2,000 | 2,000 | 2,400 | 2,600 |
| 남순천-고흥   | 8,996      | 18.69      | 1,700 | 1,700 | 1,800 | 2,100 | 2,300 |
| 울암-연경    | 8,837      | 11.99      | 1,400 | 1,400 | 1,500 | 1,700 | 1,800 |
| 북수원-동수원  | 8,588      | 6.09       | 1,200 | 1,200 | 1,200 | 1,400 | 1,400 |
| 대동-물금    | 8,518      | 9.78       | 1,400 | 1,400 | 1,400 | 1,600 | 1,700 |
| 고성-통영    | 8,002      | 19.73      | 1,800 | 1,800 | 1,800 | 2,100 | 2,400 |

## □ 개 방 식 [19개]

(단위 : 대, km, 원)

| 영업소    | 교통량<br>(일) | 요금<br>부과거리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 구리남양주  | 195,122    | 2.40       | 800   | 900   | 900   | 900   | 900   |
| 김포     | 186,271    | 3.75       | 900   | 900   | 900   | 1,000 | 1,100 |
| 성남     | 186,088    | 5.20       | 1,000 | 1,000 | 1,000 | 1,100 | 1,200 |
| 청계     | 163,800    | 5.26       | 1,000 | 1,000 | 1,000 | 1,100 | 1,200 |
| 인천     | 160,154    | 3.12       | 900   | 900   | 900   | 1,000 | 1,000 |
| 시흥     | 154,070    | 2.66       | 900   | 900   | 900   | 900   | 1,000 |
| 판교     | 85,721     | 5.26       | 1,000 | 1,000 | 1,000 | 1,100 | 1,200 |
| 남인천    | 78,610     | 3.80       | 900   | 900   | 900   | 1,000 | 1,100 |
| 가락(개)  | 38,284     | 5.12       | 1,000 | 1,000 | 1,000 | 1,100 | 1,200 |
| 하남     | 35,117     | 2.43       | 800   | 900   | 900   | 900   | 900   |
| 토평     | 27,379     | 0.99       | 800   | 800   | 800   | 800   | 800   |
| 내서     | 8,803      | 5.40       | 1,000 | 1,000 | 1,000 | 1,100 | 1,100 |
| 순천만    | 7,092      | 4.67       | 900   | 900   | 900   | 1,000 | 1,100 |
| 대왕판교   | 6,772      | 5.26       | 1,000 | 1,000 | 1,000 | 1,100 | 1,200 |
| 대동(개)  | 4,602      | 2.83       | 800   | 800   | 900   | 900   | 900   |
| 서영암(개) | 2,735      | 4.96       | 900   | 900   | 1,000 | 1,000 | 1,100 |
| 다사     | 1,653      | 3.60       | 900   | 900   | 900   | 900   | 1,000 |
| 일로     | 1,442      | 1.46       | 800   | 800   | 800   | 800   | 800   |
| 지천     | 1,204      | 3.63       | 900   | 900   | 900   | 900   | 1,000 |

※ 자료: 국토교통부

### 참고 3

### 지자체 재원부담 통행요금 지원제도

#### □ 재정고속도로

- (대 상) 출퇴근시간대(평일 6~9시, 17~19시) 울주군 관내 고속도로 영업소(9개소)\* 이용 울주군민

\* (경부선)활천·통도사, (동해선)범서·문수·청량·온양, (울산선)울산·서울산, (울산함양선)배내골

- (방 법) 통행료 지원 신청 → 환급(1인 20만원/월)

#### □ 민자고속도로

| 구 분            | 서울춘천고속도로<br>서울춘천고속도로(주)                          | 인천공항고속도로<br>신공항하이웨이(주)                   | 인천대교<br>인천대교(주)         |
|----------------|--------------------------------------------------|------------------------------------------|-------------------------|
| 대 상<br>(차 종)   | 춘천/홍천/화천/양구/가평 자동차<br>등록차량<br>(전 차량) * 관용 및 노선버스 | 영종도 권역 주민<br>(경차 및 소형차) * 렌트/법인/사업용차량 제외 |                         |
| 통행요금<br>(소형기준) | (구간별 할인) 100원~1,400원                             | (면제) 3,200원/1,900원<br>(인천공항·북인천TG)       | (면제) 5,500원<br>(인천대교TG) |
| 이용제한           | 1대당 1일 2회 (왕복 1회)                                |                                          |                         |
| 적용차로           | 전 차로                                             | 일반차로                                     |                         |
| 방 법            | 영수증 또는 하이패스 이용내역 환불<br>(주민센터 환불)                 | TCS 통과 시 RF 할인카드 제시<br>(주민센터 발급)         |                         |
| 재원부담           | 5개 시군                                            | 인천시                                      |                         |

#### □ 지자체 유료도로

| 구 분            | 미시령터널<br>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 울산 염포산터널<br>울산 하버브릿지(주) | 대구 범안로<br>대구동부순환도로(주)                            | 부산시 유료도로<br>부산항대교 등 7개사                |
|----------------|------------------------------------------------------------|-------------------------|--------------------------------------------------|----------------------------------------|
| 대 상<br>(차 종)   | 속초/홍천/양구/인제/<br>고성/양양 주민<br>(승용/5.5톤 이하 화물<br>/32인승 이하 승합) | 전 차량                    |                                                  |                                        |
| 통행요금<br>(소형기준) | (면제, 3,300원)                                               | (면제, 700원)              | (할인, 삼덕TG)<br>500→300원<br>(할인, 고모TG)<br>600→300원 | 일정시간* 내<br>유료도로 추가<br>통과시마다<br>200원 할인 |
| 이용제한           | 1대당 1일 2회<br>(왕복 1회)                                       | 제한 없음                   |                                                  |                                        |
| 적용차로           | 일반차로                                                       | 전 차로                    |                                                  | 전 차로<br>* 현금 불가                        |
| 방 법            | TCS 통과 시 RF<br>할인카드 제시<br>(주민센터 발급)                        | -                       | -                                                | 하이패스카드<br>자동 적용                        |
| 재원부담           | 강원도·시군 각 50%                                               | 울산시                     | 대구시                                              | 부산시                                    |

\* 요금소간 거리 1km당 4분(예시. 수정산터널 ~ 광안대교 64분 내 이용 시 할인)  
16km(2개 영업소 간 거리) x 4분